

의안번호	2210625
의 퇴 인	민형배의원
회 답 일	2025.6.27.
추계번호	25D3000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정치발전기금 운용 사무기구,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두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,700만원, 2031년 1억 2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4억 9,000만원(연평균 9,800만원)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정치발전기금 운용 사무기구 (안 제30조의3제3항 신설)	91	89	91	93	96	460	92
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 (안 제30조의5 신설)	6	6	6	6	6	30	6
합계	97	95	97	99	102	490	98

- 주: 1. 정치발전기금 운용 사무기구(안 제30조의3제3항 신설)는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하고,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(안 제30조의5 신설)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2. 정치발전기금 운용 사무기구의 경우, 본 추계에서는 기금운용을 전담하는 공무원(전문임기제 다급) 1명을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3.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(안 제30조의5 신설)의 경우, 본 추계에서는 6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연간 4회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4.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0조의2제2항 (정치발전기금의 설치) 신설	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정책 개발 및 연구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「공직선거법」 제57조·제261조·제265조의2 및 제271조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¹⁾ , 국가의 출연금,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,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	의무규정
2	안 제30조의3제3항 (정치발전기금의 관리·운용) 신설	사무총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음	재량규정

- 1) 「공직선거법」 제57조는 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, 제261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금전·물품 등을 요구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, 제265조의2는 당선무효된 자가 반환하는 선거비용보전액, 제271조는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에 대한 징수를 말함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30조의5 (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) 신설	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,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,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사무총장이 위촉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0조의2제2항 (정치발전기금의 설치) 신설	X	기금의 재원 중 국가의 출연금, 국가외의 자의 출연금 등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2	안 제30조의3제3항 (정치발전기금의 관리·운용) 신설	○	-
3	안 제30조의5 (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) 신설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정치발전기금 운용 사무기구(안 제30조의3제3항 신설)와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(안 제30조의5 신설)에 한하여 추계하기로 함
- 정치발전기금 운용 사무기구의 경우, 본 추계에서는 기금운용을 전담하는 공무원(전문임기제 다급) 1명을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
 - 개정안에서 규정한 기금 재원 중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, 과태료 등의 최근 4년(2020~2023년) 결산기준 총액은 약 200억원

-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보고서 기준으로 소형(1천억원 미만) 기금에 해당하여 본 추계에서는 기금운용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전문임기제 다급으로 1명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
-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²⁾의 경우, 본 추계에서는 6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연간 4회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²⁾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정치발전기금 운용 사무기구(안 제30조의3제3항 신설)

- 본 추계에서는 전문임기제 다급 공무원 1명의 보수, 기본경비, 기관부담금, 자산취득비를 산출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정치발전기금 운용 사무기구를 위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,100만원, 2031년 9,600만원으로 추정
 - 202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목명세서 기준 전문임기제 다급의 연간 보수는 6,900만원(봉급, 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, 초과근무수당)
 - 추계기간 동안 최근 3년(2023~2025년) 공무원 보수 평균 상승률 2.4%를 적용
 -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기관부담금요율³⁾을 적용하고, 기본경비 비율은 202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 기준 6.7% 적용
 -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용역에 따른 2020년 기준 4,197,000원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2027년 기준 5,080,000원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4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%	2.3%	1.9%	2.0%	2.0%	2.0%	2.0%

3) 2027년 13.130%, 2028년 13.194%, 2029년 13.286%, 2030년 13.380%, 2031년 13.476%

[표 2] 정치발전기금 운용 사무기구의 공무원 채용에 따른 소요비용 추정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보수(a)	72	74	76	78	80	380
기관부담금	9	10	10	10	11	50
기본경비(=a×6.7%)	5	5	5	5	5	25
자산취득비	5	—	—	—	—	5
합계	91	89	91	93	96	46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(안 제30조의5 신설)

- 본 추계에서는 민간위원 수, 회의개최 횟수, 회의참석수당을 곱하여 산출
 - 개정안은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추계에서는 50%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6명으로 가정
 - 회의개최 횟수는 연간 4회로 가정하고 회의참석수당은 25만원이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600만원으로 추정
 -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은 매년 600만원(=민간위원 6명×연간 4회 개최×회의참석수당 25만원)

다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정치발전기금 운용 사무기구,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두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,700만원, 2031년 1억 2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4억 9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						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정치발전기금 운용 사무기구	91	89	91	93	96	460
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	6	6	6	6	6	30
합계	97	95	97	99	102	49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정하고, 기금운용을 전담하는 공무원(전문임기제 다급) 1명 신규 채용, 정치발전 기금운용심의회에 6명의 민간위원 위촉 등을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